

사 이 버 성 폭 력  
피 해 자 지 원  
시 범 사 업 추 진  
결 과 및 지 원 체 계  
가 이 드 라 인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결과 및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 사업책임: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임경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조자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강효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임)
- 사이버활동단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여 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처장)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처장)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외 10명
- 사업자문 : 이선미(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교육팀장)



# Contents

## I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추진결과 \_ 01

- 사업목적 ..... 3
- 사업개요 ..... 4
- 추진 현황 ..... 6
- 시범사업이 남긴 성과와 과제 ..... 30

## II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가이드라인\_ 35

- 목적 ..... 37
-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 37
- 사이버성폭력 정책 과제 ..... 48



# I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추진결과



# I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추진결과

### □ 사업목적

- 사이버성폭력 피해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지원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
  - 피해자 상담 및 통계분석을 통해 피해 현황 파악
  - 피해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사이버성폭력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 된다는 것. 이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사이버장 의사 등을 이용하지만 재정적 부담으로 연결. 유포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 비동의 유포 촬영물 삭제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삭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캠페인 등을 통한 피해 영상물 다운로드, 유포 등을 통한 가해 행위 중단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17년 10월 25일 ~ 2017년 12월 31일
2.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및 거주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3.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피해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상담 창구 홍보 및 상담</li> <li>• 사이버활동단 구성 및 교육</li> <li>• 상담 활동 및 피해 현황 파악</li> </ul>	2017.10~12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심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지원 협의위원회 구성</li> <li>• 촬영물 검색 프로그램 대여 및 관리</li> <li>• 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li> <li>• 사례관리 : 트라우마 심리상담</li> </ul>	
피해지원 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회의를 통한 효율적 피해지원</li> <li>• 프로세스 논의 및</li> <li>•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li> </ul>	
인식개선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 성폭력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li> </ul>	2017.12.15.~ 12.22

## 4. 사업 목표대비 달성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달성지표	비고
상담 창구 개설 및 상담 <sup>1)</sup>	인원	81명	피해자 지지상담 및 영상삭제 지원 서울시 소재 및 주거지 기준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영상삭제 지원	인원	57명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사례관리지원)	인원	3명	
인식개선 캠페인	횟수	6회	

1) 피상담인에 대해서는 최소 1인당 최소 2-3회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상담횟수는 200회 내외로 추정됨.

## 5.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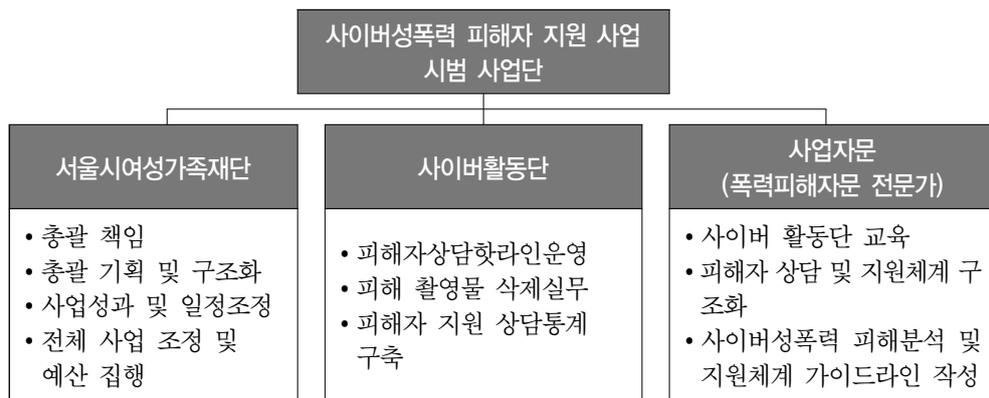
○ 본 시범사업은 2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존 체제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 활동가를 자문위원으로 시범사업단을 구성하였음

○ 시범사업단 참여 기관 및 개인

참여	역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총괄</li> <li>•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체계구축방안 조정</li> <li>• 사업수행 전반의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기획 및 구성·조정</li> </ul>
사이버활동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활동단으로 삭제지원 및 상담수행</li> <li>• 기존 상담/삭제업무를 토대로 피해자지원 체계 수립</li> <li>•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상담통계 누적 및 타 단체 연계</li> </ul>
폭력피해자문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활동단 교육 전담수행</li> <li>• 사이버성폭력 및 유사 젠더폭력과의 지점 및 체계구축 자문</li> </ul>

○ 역할



## □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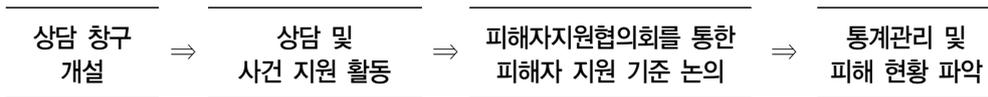
### 1. 피해자 상담 및 피해현황 파악

#### 1) 개요

##### (1) 목적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창구 마련
- 피해 양상에 대한 심층적 파악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피해현황 파악
- 피해자들의 주요 호소내용, 수사·법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근거로 피해자 중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정책요구 파악

##### (2) 사업진행 과정



#### 2) 추진내용

##### (1) 상담 창구 개설

- 상담기간: 2017년 10월 25일 ~ 12월 15일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기존 상담 창구<sup>2)</sup>

상담 방법	내 용
전화	02-817-7959
이메일	cybersv.hotline@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kcsvrc
홈페이지	www.cyber-lion.com

2) 사이버성폭력 대응 경험을 보유한 기존 활동가를 중심으로 상담팀 구성, 상담원 채용 및 교육, 상담 창구 개설을 위한 준비과정을 생략하고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상담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음

## (2) 상담 및 지원 활동

- 아래 절차도에 따라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 진행
- 법률, 심리상담 지원의 경우 변호사, 트라우마치유센터 등과의 연계 필요. 별도의 지원비용이 필요하여 본 사업 피해자지원협의회에서 시범 사업 내 지원 가능한 범위 기준을 논의하여 지원 결정. 향후 가이드라인 정교화 및 세부지원 방안 구체화 필요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상담 및 지원절차도



※ 사건 지원은 피해상황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함

○ 상담 단계별 주요 내용<sup>3)</sup>

상담 단계		내 용
① 사건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메일, 전화, SNS를 통한 최초 상담 접수</li> <li>• 전화로 최초 상담 하는 경우 접수와 상담이 동시에 진행 됨</li> </ul>
② 피해자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내용 등 피해경위 파악</li> <li>• 증거 확보 방법 안내하고 대응 방안 논의</li> <li>• 지원 가능 내용 안내</li> <li>• 피해자 지지상담 및 일반 문의 답변</li> </ul>
③ 사건지원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법률 문의 답변</li> <li>• 변호사 연계 지원</li> <li>• 사건에 대한 의견서 검찰, 법원 발송</li> </ul>
	삭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포 피해 등 피해물 삭제가 필요한 경우</li> <li>• 피해 원본 및 URL 등 유포 추적을 위한 정보 파악</li> <li>• 플랫폼별 신고를 위한 채증작업</li> </ul>
	수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신고, 고소장 작성 및 수사과정 지원</li> <li>• 피해자 진술 시 상담원 동행</li> <li>•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li> </ul>
	트라우마치유 심리상담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우마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 지원</li> </ul>
	지지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지지와 임파워링을 위한 사업단 소속 상담원의 지속적 상담</li> <li>• 주로 협박 피해나 법률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담 해당</li> <li>※ 지속적인 지지상담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추후 필요</li> </ul>

3) 본 시범사업에서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에 대한 전반적 절차가 구성되었으나, 법률지원 및 수사지원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음

### (3) 상담통계

#### ○ 상담 총계 81건(2017.12.31. 기준)

- 상담 통계는 피해자 특성, 피해유형, 촬영물 유포 플랫폼, 피해자 지원조치로 나뉘어서 살펴 봄
- 시범 사업 내에서 상담 통계의 한계 지점
  - 건수(명수)와 횟수 구분이 안되어 피해자 지원의 전체 현황을 볼 수 없음
  - 가해자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가해자-피해자 관계, 유포 피해 플랫폼의 상세 업체 등을 파악하기에는 상담의 양적인 규모가 적어서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어려움
  - 향후 피해자지원의 양적인 규모가 늘어나면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한계를 바탕으로 통계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 함

#### 가. 피해자 특성

-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76건, 9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남성은 4건으로 5%,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1%에 해당
- 연령은 성인 68건. 미성년자 13건으로 내담자 84%는 성인.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진 합성이나 사이버불링 등의 피해가 많음

내용	구분	건(%)	계
성별	여성	76(94%)	81
	남성	4(5%)	
	여성·남성	1(1%)	
연령	성인	68(84%)	81
	미성년자	13(16%)	

### 나. 피해자-가해자 관계

- 사이버불링, 불법 도촬, 유포, 유포 협박 피해가 포함 된 사이버성폭력 전체 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불상(익명) 25건, 전애인 22건, 일회성 만남 상대 12건 순.
- 불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발생하는 가해행위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익명의 채팅 상대자, 설치 형 몰래카메라를 통한 ‘도촬’ 피해, 게임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한 재유포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 시범사업에서는 불상의 유형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해 집단이므로 향후 불상에 해당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분석이 필요함.
- 일회성 만남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어나가는 관계가 아닌 일회성으로 성관계를 가진 상대에 해당
- 미탐색은 상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전에 상담이 종결된 것으로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건에 해당함.  
내담자가 자신의 사건이 자세히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거나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내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상담이 종결 되는 등이 해당

내용	구분	건(%)	계
피해자-가해자 관계	불상(익명)	25(31%)	81
	전애인	22(27%)	
	일회성 만남	12(15%)	
	채팅 상대	5(6%)	
	지인	5(6%)	
	남편/애인	3(4%)	
	미탐색	9(11%)	

- 사이버성폭력 중 촬영물이 유포 된 피해에서는 전 애인12건, 일회성 만남 5건, 불상(익명)은 4건 순으로 나타남. 전체 사이버 성폭력 피해는 불상(익명)이 31%로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 하였을 때 유포 피해의 경우 전 애인이 40%로 나타났음

내용	구분	건(%)	계
유포피해 내 피해자- 가해자 관계	전 애인	12(40%)	30
	일회성 만남	5(17%)	
	불상(익명)	4(14%)	
	지인	1(3%)	
	채팅 상대	1(3%)	
	미탐색	7(23%)	

#### 다. 피해 유형

- 유포 피해에 해당하는 비동의 영상 유포 25건(31%), 비동의 사진유포 5건(6%) 와 사진 성적 합성 2건(2%)이 전체 건수의 32건으로 39%의 비율을 차지
- 유포 협박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12건(15%)임.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됨.
-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성적 사이버불링이 13건으로 16%. 게임 내 성적 괴롭힘, 커뮤니티 내 성희롱, 개인의 신상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피해가 이에 해당

구분	건(%)	계
영상 유포	25(31%)	81
사진 유포	5(6%)	
유포 협박	12(15%)	
유포 불안	10(12%)	
사진 합성	2(2%)	
불법 도촬	11(14%)	

구분	건(%)	계
사이버불링	13(16%)	
기타	3(4%)	

#### 라. 촬영물 유포 플랫폼

- 촬영물이 여러 플랫폼에 게시되었을 경우 중복 건 포함
- 2017년 9월 정부대책 발표 이후 국내 웹하드 사이트의 비율이 급감하는 추세이나, 해외 서버의 불법 포르노사이트와 SNS를 중심으로 피해촬영물 유포가 심화되고 있음
- 포르노사이트와 SNS의 유포 비율은 36건으로 72%에 해당.

국내 웹하드와 달리 해외 포르노사이트는 삭제 신고 접수창구가 없거나, 사이트 관리자의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처리 속도가 더디고 완벽한 삭제가 어려움. SNS 또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 및 피해촬영물 파악 어려움. 채증 이후 경찰 신고 과정에서도 포르노 사이트와 SNS는 가해자 특징이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중복 포함)

구분	건(%)	계
포르노사이트	21(42%)	50
SNS	15(30%)	
웹하드	5(10%)	
토렌트	3(6%)	
기타	6(12%)	

### 마. 피해자 지원 조치

- 초기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결정.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의 경우, 지지, 삭제, 수사, 법률 상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지지상담으로 종결되는 상담은 38건으로 42%에 해당. 협박이나 불안 등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됨.
- 단회 상담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차례 연속 상담으로 진행. 삭제·수사·법률·심리상담연계의 사건 지원 중에도 지속적으로 지지상담 차원의 상담지원을 병행함
- 그 외 지원 활동으로 삭제지원은 19건으로 21%, 법률지원14건, 수사지원10건, 심리상담연계 지원10건 순

(중복 포함)

구분	건(%)	계
지지상담 지원	38(42%)	91
삭제 지원	19(21%)	
수사 지원	10(11%)	
법률 지원	14(15%)	
심리상담연계 지원	10(11%)	

#### ※ 상담통계 구축의 주요 현안

- 시범사업기간동안 누적된 상담통계로, 피해자 세부 유형화의 한계가 있음
- 유포협박등에 의한 지지상담의 범위가 넓고 빈번함
-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불상(익명)으로 파악되는 비율이 높는데 가해자가 익명의 경우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우회등은 개별 상담통계 누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음. 사이버성폭력을 위한 상담통계 구축이 장기적으로는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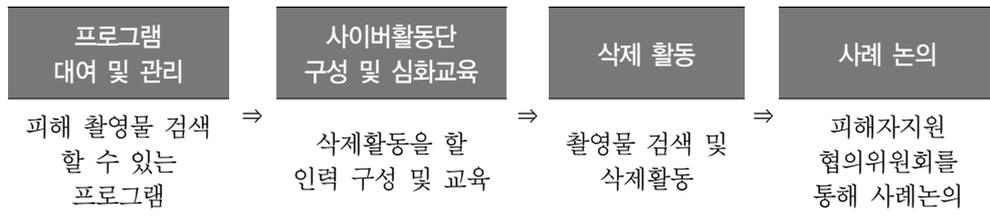
## 2.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 1) 개요

#### (1) 목적

- 비동의 유포 촬영물 유포 피해자 지원
- 유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지원 체계 정립
- 검색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 (2) 사업진행 과정



## 2) 추진내용

### (1) 검색 프로그램 대여 및 관리

#### 1) 개요

- 프로그램 명: 온 00
- 제작사: (주) 0000
- 내용: 피해 촬영물 검색 및 피해자 별 유포 게시글과 사이트 관리

○ 프로그램 화면 예시

과정	진행 예시
<p>피해자별 계정생성 로그인 및 키워드입력</p>	
<p>피해현황 검색결과 및 본인여부 체크</p>	
<p>삭제결과 및 주기적 점검</p>	

## 2) 검색 프로그램

○ 목적: ‘사이버 장의사’라는 이름으로 상업화 되어 있는 피해 촬영물 삭제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효과성 검증도 어려움. 프로그램 대역을 통해 피해 촬영물 삭제 효율성을 꾀하여 삭제 활동의 공익성 확보

### ○ 특징

- 프로그램이 접근 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국내 웹하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플랫폼 접근 가능)
- 여러 개의 키워드를 동시에 검색하고 시간제한 없이 검색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시간 단축
- 피해자별로 키워드를 관리하고 기존에 찾았던 게시물을 분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검색해야 할 경우에도 중복 된 게시물을 피해서 새로운 게시물만 찾아 낼 수 있음

프로그램 사용 전	프로그램 사용 후
피해자 마다 각각의 키워드를 모든 플랫폼에 수동으로 검색	▶ 피해자 별로 키워드 입력 후 자동 검색
검색한 결과 페이지의 모든 게시물을 육안으로 피해촬영물인지 구분	▶ 매칭율이 높은 검색결과만 크롤링 되어 피해촬영물 구분이 간편해짐
탐색한 피해촬영물 URL을 엑셀로 복사해 분류	▶ 프로그램 내 시스템화 된 분류
재검색 시 기존 분류했던 게시물인지 엑셀 리스트에서 확인하여 구분	▶ 재검색 시 기존 분류된 게시물은 결과 반영되어 구분이 용이

## (2) 사이버활동단 구성 및 교육

○ 사이버 활동단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이미 교육 받고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업 수행과 동시에 활동에 투입 될 수 있었음

- 성폭력에 대한 기본 교육, 상담을 위한 교육, 삭제 활동을 위한 기술 교육 등이 생략되었는데 이는 본 시범사업의 특징으로 이해되어야 함. 향후 사이버 활동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에 준하는 교육과 인터넷 환경과 플랫폼 별 필요한 기술 교육 등이 추가적으로 진행 되어야 함

### ○ 사이버 활동단 구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범 사업의 특성 상 단기간에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삭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가로 한정하였음</li> </ul>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에 대한 젠더적 관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 보유 : 기존 성폭력피해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원.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 활동 경력</li> <li>• 위 역량에 더해 웹사이트 삭제, 모니터링 관련 업무에 수반되는 기술</li> </ul>
구성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명</li> <li>• 상담인력 6인, 삭제 및 모니터링 인력 9인</li> </ul>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 피해자 상담 및 사건 지원</li> <li>• 촬영물 삭제 : 피해 접수 된 사건 촬영물을 추적하여 삭제요청</li> <li>• 모니터링 : 일상적으로 국내 웹하드, 외국 포르노 사이트 등 모니터링 하여 피해 촬영물 찾아서 삭제 요청 : 집중 삭제 기간이 끝난 피해 촬영물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재유포 되었는지 확인하고 삭제요청</li> </ul>

○ 활동단 그룹심리치료

- 상담가: 주○○ (한국○○○○○○ ○○)

- 내용: 검색 프로그램과 직접 찾아낸 촬영물은 일일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촬영물에 노출되는 활동단의 스트레스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공감하면서 생기는 활동단의 간접 트라우마 과정 해소를 위해 그룹 심리치료 진행

차 수	내 용
1	• 간접 트라우마 스트레스와 소진의 심리사회적 영향. 관리직무 및 일상생활 삶의 점검
2	• 간접 트라우마 및 소진 관리1 : 무의식적 공감과정의 이해 : 신체감각기반 치료인 Somatic Experiencing을 중심으로 경계세우기
3	• 간접 트라우마 및 소진 관리2 : 자원 개발1 : 간접 트라우마 기억의 관리
4	• 간접 트라우마 및 소진 관리3 : 의미 추구 : 자원 개발2

○ 활동단 심화교육

강사: 이○○ (전 ○○○ 팀장)

- 내용

: 피해 촬영물 유포 경로와 사이버성폭력의 특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삭제제를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기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기획 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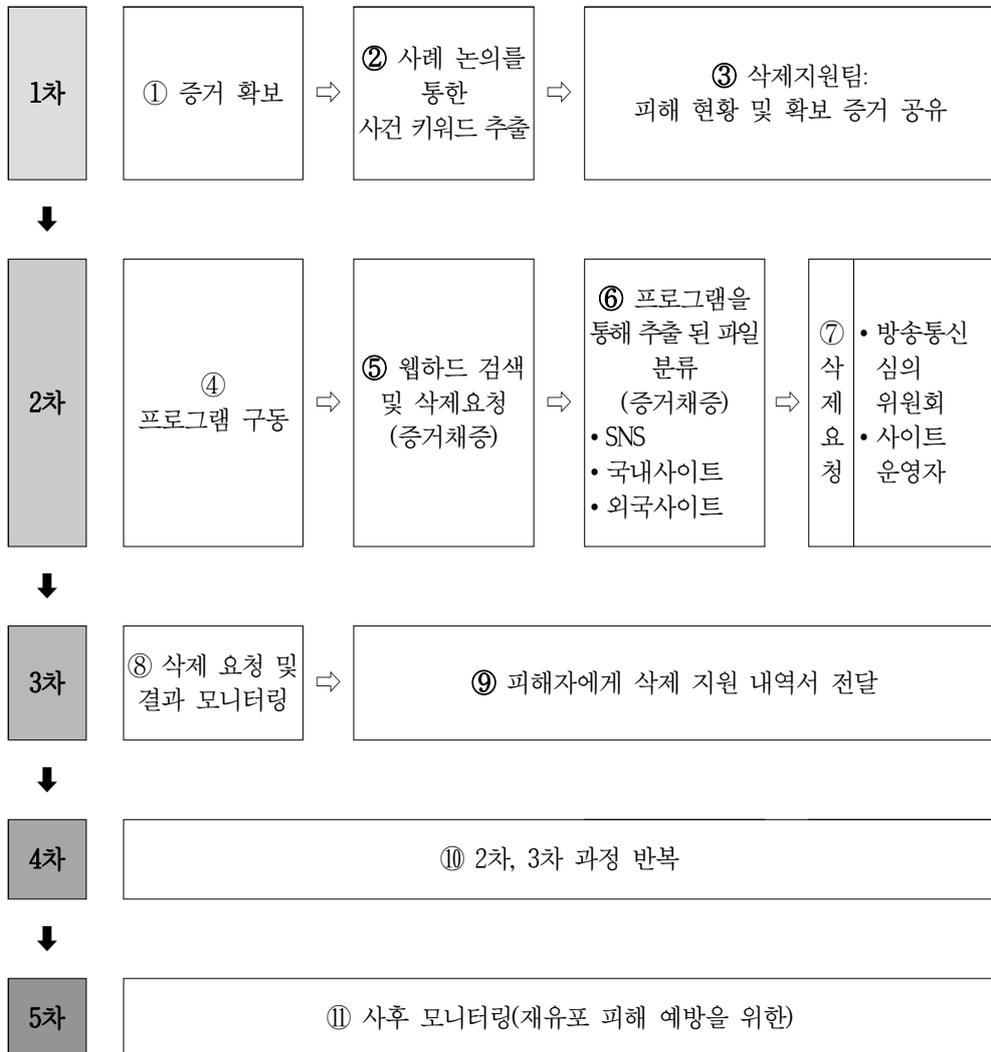
: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성폭력 피해 다른 유형들과의 연관성, 성폭력 전반의 정책적 과제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의 위치, 수사법률 지원을 위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

차수	강 의 명	세부내용
1	성폭력 피해의 수사과정	피해자가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원의 역할
2	성폭력 관련 법률의 이해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형법 등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
3	사이버성폭력 사례분석을 통한 이슈 분석	다양한 사이버성폭력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자 상담과 지원 방법 모색
4	사이버성폭력 관련법과 수사 지원	기존 성폭력 관련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이버성폭력을 위한 정보통신법 등의 법률과 사이버 성폭력 수사과정의 어려움 알아보기
5	스토킹에 대한 이해	사진/ 동영상 유포 협박은 스톱킹 피해 유형 중 하나. 스톱킹 대처법을 통해 협박에 대한 대처 방법 찾아보기
6	성폭력 담론점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검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서 중요한 피해자중심주의의 역사성과 한계 그리고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 살펴보기
7	법적 성폭력 개념의 한계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성폭력의 개념의 한계를 살펴보고 피해자들의 호소하는 성폭력 개념의 차이 살펴보기
8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알아보기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범죄피해구조금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알아보기
9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1	고소장, 탄원서, 합의서 등 법률지원을 위한 서류작성
10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2	내용증명, 의견서, 상담확인서 등 법률지원을 위한 서류 작성

### (3) 촬영물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 삭제 활동 :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을 찾아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받아들여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 촬영물 삭제지원 절차 개요



## ○ 촬영물 삭제지원 절차 상세내용

절차		상세 내용
1차	① 증거 확보	피해자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함 유포 된 파일이 올라와 있는 게시물 제목과 본문 내용, URL, 파일, 발견 된 화면 캡처 등 확보 피해자와 주변사람이 파일을 발견 하였을 때 당황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유포 된 경로 파악이 어려움
	② 사건 키워드 추출	파일 제목, 본문 내용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할 수 있는 키워드 추출하고 검색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키워드 조합을 찾아야 함 키워드가 ‘유부녀’, ‘여친’, ‘여대생’ 등 일반적인 검색어는 파일이 너무 많이 나와 프로그램에 과부하가 걸리고 피해 영상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
	③ 삭제지원팀 :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 공유	삭제지원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담당자 배정하고 삭제 과정으로 돌입 피해자에게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크롤링하여 키워드를 추가하고 지원과정에서 키워드 발견 시 추가
2차	④ 프로그램 구동	프로그램에 피해자 등록(피해자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 키워드 등록하여 프로그램 구동
	⑤ 웹하드 검색 및 삭제요청	로그인 하여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검색 안됨으로 삭제팀 인력 배치 미래부 등록 국내 P2P 사이트 61개(2017.11 기준) 웹하드 업체별로 검색 후 업체에 삭제요청 피해자 개인 아이디를 만들어 삭제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위임장의 기한은 사후 모니터링까지 고려하여 1년으로 받음)
	⑥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 된 파일 분류	로그인 필요 없는 검색엔진 중심. 주로 구글 기반으로 검색됨(국내 검색엔진도 추가할 수 있으나 국내 업체는 자체 검열 수준이 높아 검색 결과가 많지 않음) SNS의 경우 검색엔진에서 발견 되는 것은 일부 게시글일 뿐이고 내부 검색기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추출 된 게시글을 중심으로 경로를 역추적하여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 추출 된 파일을 피해 촬영물이 맞는지 대조하여 확인. (프로그램은 키워드로 검색하여 게시물 리스트를 만들고 피해 촬영물과 대조하는 것은 인력으로 해야 함)

절차		상세 내용
	⑦ 삭제요청	<p>국내 검색엔진은 업체에 개별 신고 조치 안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p> <p>외국 서버의 업체(주로 포르노사이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는 국내에서 보이지 않도록 IP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게시물 삭제 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p> <p>: 사이트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조치가 안되는 경우 → 한국 인터넷진흥원 &lt;WHO IS&gt; 메뉴에서 검색하여 서버판매자 기업을 찾아 → 판매자에게 조치를 촉구하는 메일 발송</p> <p>: 외국 서버이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요청에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음. 발견되는 서버 국가는 80%정도 미국</p>
3차	⑧ 삭제요청 결과 모니터링	삭제요청을 한 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결과 확인 검색과 프로그램 구동을 통해서 재검색 되는 지 확인 조치가 안된 경우 다시 삭제요청을 하고 모니터링
	⑨ 삭제 지원 내역서 전달	피해자에게 검색사이트 수, 검색키워드, 삭제완료 건 수 등 정보 제공하고 향 후 대응 방안 논의 한 달에 한번 피해자에게 전달
4차	⑩ 2, 3차 과정 반복	집중 삭제기간 3개월 2, 3차 과정을 반복하고 한 달에 한번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내역서 전달
5차	⑪ 사후 모니터링	주로 게시물을 다운로드 한 사람들이 재유포 하는 것을 모니터링 사후 모니터링 기간은 집중 삭제기간 이후 3개월.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검색하여 삭제요청하여 재유포 방지

## (2) 피해자 지원 협의위원회 (총 12회)

- 목적: 피해자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유포 경로와 키워드를 뽑고 효과적인 삭제를 위한 논의
- 구성: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사업 수행 주체 및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실무자 총 6명

## ○ 주요 논의

- 피해자별 희망 지원 내용 파악 및 우선순위 선정
- 피해자별 삭제지원 가능 여부 파악
- 지원 착수 전 일정 및 유의사항 공유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삭제지원의 주요 현안**

## 1) 프로그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간대비 대여 프로그램으로 활용됨
- 장기적으로는 사이버활동단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프로그램 활용의 공익성 및 정보보안 필요

## 2) 사이버활동단

- 본 사업에 투입된 활동단은 숙련된 삭제노하우 및 여성주의 인식에 기반함
- 이는 여성주의 상담교육, 영상삭제 기술교육이 제외된 형태임
- 신규 양성시, 100시간의 상담활동가교육 및 영상삭제교육, 심화교육 등이 필요함
- 아울러 영상이 활동단에게 또 다른 피해로 남지않도록 트라우마 치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사업의 특징적인 측면임

## 3) 트라우마 심리치료

- 피해자의 경우 재난, 재해, 사건 및 사고등의 트라우마와는 다른 불안호소
- 이는 피해자 및 전문상담가들에게도 새로운 유형의 치료 및 전문가집담회 등을 통한 논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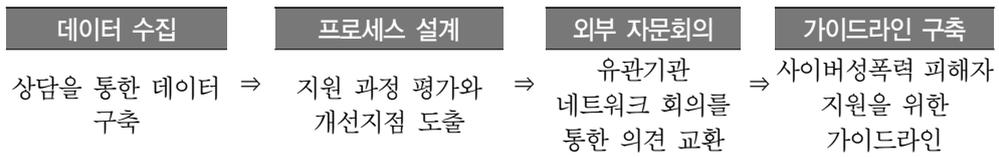
### 3.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

#### 1) 개요

##### (1) 목적

-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프로세스 정립
- 지원방안 제도화 방안 마련

##### (2) 사업진행 과정



#### 2) 추진내용

##### (1) 자문회의 (총 8회)

- 목표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 구조화 및 프로세스 설계 자문
- 구성 : 성폭력상담소 소장, 상담팀 활동가, 검색 프로그램 개발자 등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구분	안건	주요 논의
1 (2회)	삭제 프로세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프로세스 구축, 보완</li> <li>○ 검색 프로그램 키워드 추출 방식</li> <li>○ 피해자 별 유출 게시물과 사이트 관리</li> </ul>
2 (1회)	피해자 지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원 소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인 사례논의와 공유를 통해 상담자 부담 나누기</li> <li>-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오랜 시간 활동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li> </ul> </li> <li>○ 피해자 지원이라는 무게감에 눌리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시간과 업무시간 지키기</li> <li>- 활동가들의 개인시간 확보 등</li> </ul> </li> </ul>

구분	안건	주요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성폭력운동으로서의 피해자지원 활동의 방향에 대한 논의</li> </ul>
3 (2회)	피해자 지원 실무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박피해 피해자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로 구성되는 이유를 찾아 상담 방향 찾아가기</li> </ul> </li> <li>○ 피해자 지원의 실무를 사이버활동단에 적용, 법률지원의 세부 사항 논의</li> </ul>
4 (3회)	피해지원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지원 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을 위해 기존 성폭력상담소의 체계와 비교하여 사이버성폭력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 논의</li> <li>○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과제를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하기</li> <li>○ 시범사업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기</li> <li>○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불상을 구체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밀한 관계의 배우자, 썸 등 추가</li> <li>- 직장과 학교에서 관계 추가</li> </ul> </li> <li>○ 상담통계 구조화 각 단체의 상담통계 프로그램 공유</li> </ul>

**(2) 프로세스 절차구성 간담회 (총 6회)**

- 목표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상담 및 삭제지원에 대한 프로세스 구축 정교화
- 구성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사업수행주체 및 상담, 피해자영상 삭제지원 실무자 총 6명

회차	안건	주요 논의
1차	사이버피해자 협의위원회 역할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피해자는 선정보다는 케이스지원 범위와 내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위원회에서 협의위원회로 명칭변경</li> </ul> </li> </ul>
2차	프로세스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대응 : 접수-상담</li> <li>○ 직·간접지원방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가지 지원방식 및 중복지원 가능방식으로 구성</li> <li>- 영상삭제,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지상담으로 세 분류</li> </ul> </li> </ul>

회차	안건	주요 논의
3차	사이버활동단 모집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활동단 신규모집은 불가</li> <li>○ 시범사업기간동안 기 삭제 및 상담유경험자 우선구성 및 활동가능,</li> <li>○ 사이버활동단 운영방식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이버피해영상 삭제 경력자 중심구성</li> <li>- 실무외에 역량강화 심화교육 구성 10회차</li> <li>- 트라우마 치료프로그램 병행 실시 (총 4회 이내)</li> </ul> </li> </ul>
4차	홍보방식과 범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활동단 피해자지원에 관한 대시민인식 부족 거리캠페인을 통한 사업효과 및 홍보확대</li> </ul>
5차	심리상담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소재 혹은 서울에 근거지 한정</li> <li>- 다만, 향후 사업시 사이버사업특성상 원거리, 해외 거주자 등의 문의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 있음</li> </ul> </li> <li>○ 2달간의 시범사업을 감안하여 총7회기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후 회기/비용의 문제 고려 필요함</li> <li>- 또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치료대응 방식이 전문가 간에 구성되어있지 않음을 감안, 전문가 워크숍 추가마련 필요</li> </ul> </li> </ul>
6차	경찰대응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여성청소년계와 사이버수사대 공조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 상 사이버영역이나 주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함</li> <li>- 경찰청에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수사지원관 구성제안 필요</li> </ul> </li> </ul>

#### 4.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지원

- 상담자 : 주○○
- 피상담자 : 피해자 3명 (서울소재 및 서울근거지를 둔 피해자 우선 선정)
- 상담장소 : 비공개
- 상담차수 : 각 7회
- 주요 상담결과 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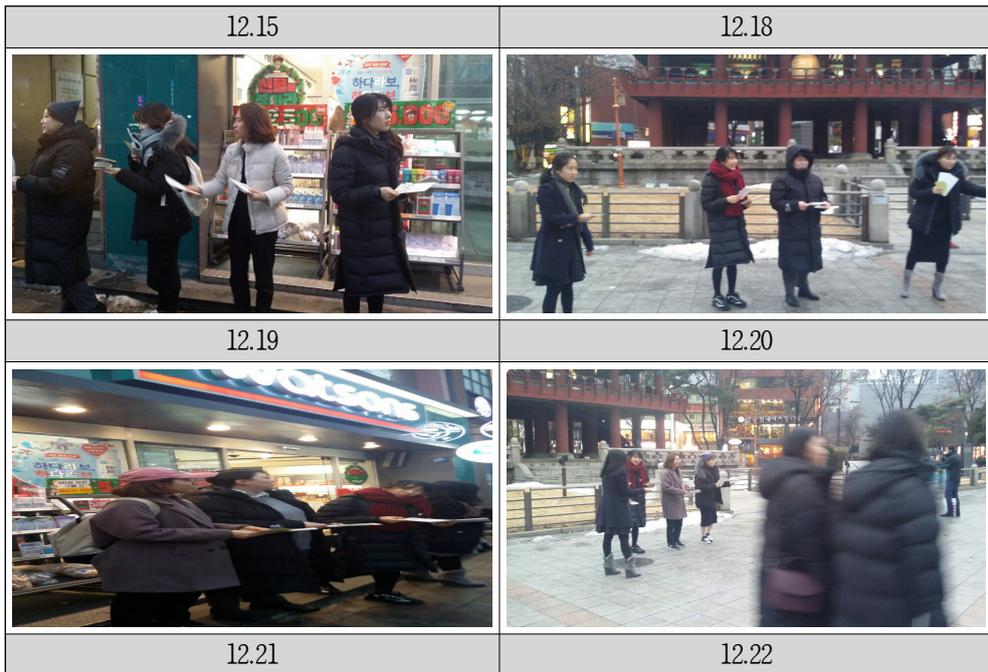
피해자	<p>최소한 집중삭제기간 이후 모니터링 기간까지 심리상담이 필요함.          삭제가 쉽지 않은 플랫폼에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이므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함.          사건 진행이 우선은 일단락 된 경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심리상담을 통한 트라우마 심리치료가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함.</p>
전문가	<p>성적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상담자의 경우 우울, 자살등의 위험이 더 높음.          다른 트라우마치료가 사후적 처치에 해당한다면, 사이버성폭력의 경우 법률, 의료, 수사지원등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최소 12주-16주의 상담이 소요됨.</p>

#### 4. 캠페인

- 목적 :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피해 대응방법 및 절차 홍보
- 추진방안 : 사이버성폭력 인식개선 팸플릿 배포(3500부 배포)
- 추진일시 : 12월 15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 추진장소 : 홍대 및 종각역 인근(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 중심)

일시	시간	장소
12.15	12:00~20:0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
12.18	12:00~20:0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
12.19	12:00~20:0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
12.20	08:00~16:00	종각역 4번 출구 인근
12.21	08:00~16:00	종각역 4번 출구 인근
12.22	08:00~16:00	종각역 4번 출구 인근

#### ○ 캠페인 사진





## □ 시범사업이 남긴 성과와 과제

### 1. 성과

#### 1) 피해 촬영물 삭제 활동 공적지원 구조화

- 촬영물 유포 피해의 경우 이미 사이버장외사 등 개인적 해결을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노력을 투여 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아 상담을 하는 사례 접수. 사이버장외사의 경우 이미 상업화 되어 있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부담. 피해 촬영물 100% 삭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장외사들은 이러한 내용 안내하지 않음.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구조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였음
- 이에 본 시범사업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로서 촬영물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내용을 마련

#### 2)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영역 확대

- 경찰 신고 이후에도 인터넷 유저들에 의해 영상은 재유포됨. 이러한 양상은 사이버성폭력이 다른 성폭력 범죄와 다른 점임. 때문에 촬영물 삭제 지원은 필요하지만 기존 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지원센터, 1366에서 촬영물 삭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공백으로 남아 있었음

#### 3) 사이버성폭력 상담지원 체계 구축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 피해자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된 사람들에게 촬영물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을 가짐.
- 이 과정에서 본인의 촬영물이 성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존재. 피해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때도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피해를 감추고 축소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을 돌보지 못

했던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은 향후에도 필요하며 시범사업은 기초적인 체계를 마련하였음.

#### 4)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 피해지원협의위원회, 외부 자문회의, 활동단 교육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이버성폭력 사건 지원을 위한 내용과 지원 기준 논의를 기반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 확보

## 2. 과제

### 1)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에서 “대응”으로 사업방식 전환

-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향을 고민할 필요 있음
- 피해자지원과 함께 수요차단을 위한 활동 필요.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의 [촬영 → 최초유포 → 재유포] 고리 끊어내는 것이 필요. 범죄영상이고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과 피해를 재생산 하는 구조로 수익을 내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

### 2) 피해자 지원 방안 다각화 방안 모색

- 성적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거나 동의해서 찍었던 촬영물에 대해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
-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피해자 자신이 느끼는 불안(자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두려움, 재유포에 대한 걱정 등)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젠더적 관점에서 피해를 해석하고 역량강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사례에 따라서 장기적인 심리치료 연계

- 또 플랫폼 별 접근 방법, 검색, 삭제 방법 등에 대한 구체화와 지속적인 업데이트해야 함

### 3)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인식기반 전문활동가 지원

- 본 시범사업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상담과 지원 활동을 위한 인력 구성 및 교육 등 사전 준비 과정이 생략되어 있음.
- 촬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는 삭제팀의 경우 인터넷 검색 능력과 다양한 플랫폼 활용이 가능해야 하지만 유포 피해는 성폭력피해 대응 관련 역량이 필요함. 따라서 기존 성폭력피해자 전문상담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필요함.

### 4) 기존 피해자지원체계와의 연계방안 마련

- 피해 촬영물 삭제를 제외한 피해자 지원 내용은 기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1366에서 지원 내용과 중복 될 가능성 있음. 기존 피해자지원체계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의 효율화 방안 마련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트라우마 심리치료 연계 등 별도의 지원금과 네트워크 필요.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 5) 사이버성폭력 신고·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 및 교육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온라인 환경과 유통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이버수사대에서는 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 호소
- 수사관이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발언을 하거나 신고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거나 접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음

- 수사과정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 지금까지 통신매체 이용음란, 정보통신법 음란물 유포죄는 성폭력피해가 아닌 것으로 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아니더라도 성폭력피해자 보호조치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함.

#### 6) 재유포자 처벌 미비와 유통 플랫폼 단속 강화

- 불법 도촬의 경우 촬영 장소,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초 유포자 찾는 것이 어렵고 유포 시기 또한 정확한 시점을 찾기 어려움.
- 대부분 장기간 유포 되었다고 추측되고 그 만큼 광범위하게 유포 되어서 삭제하는데 시간 많이 들고 어려움. (단순)유포자들에 대한 제재 필요함
- 재유포자의 경우 촬영물이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 안 되고 일반적인 음란물 유포와 같은 죄. 때문에 기소유예되는 경우 많고 헤비유저들의 경우도 낮은 벌금형이 나오고 있음. 국내 헤비유저들의 경우 벌금형보다 유통으로 버는 수입이 더 높다고 보여짐
- 또한 헤비유저들의 방관하면서 유통을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제재 필요

#### 7) 유통 플랫폼별 특징정리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

- 국내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외국 서버 기반인 한국어 포르노사이트의 경우 피해 촬영물을 찾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게시물에 대한 IP를 차단하는 조치만 가능 할 뿐 게시물 삭제하는 것은 어려움
- SNS의 경우 검색 기능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찾기 어려움
- 최근 사용을 많이 하는 개인메신저(예 카카오톡)로 유포 되는 경우 지인 유포라는 점에서 증거 채증이 쉬울 수 있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유포 사실 확인 및 삭제를 할 수 있음



# Ⅱ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 II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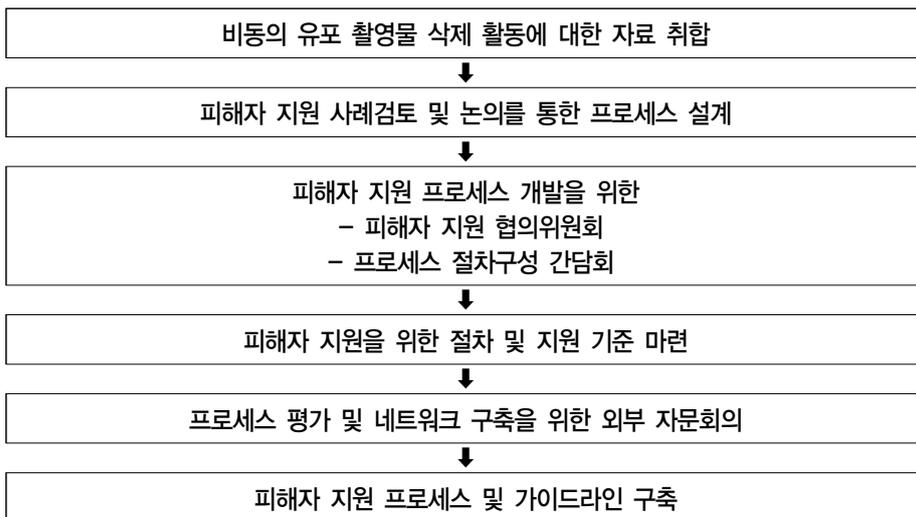
### □ 목적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직접 지원을 위한 피해자 상담과 사건 지원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과제 검토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정책검토

### □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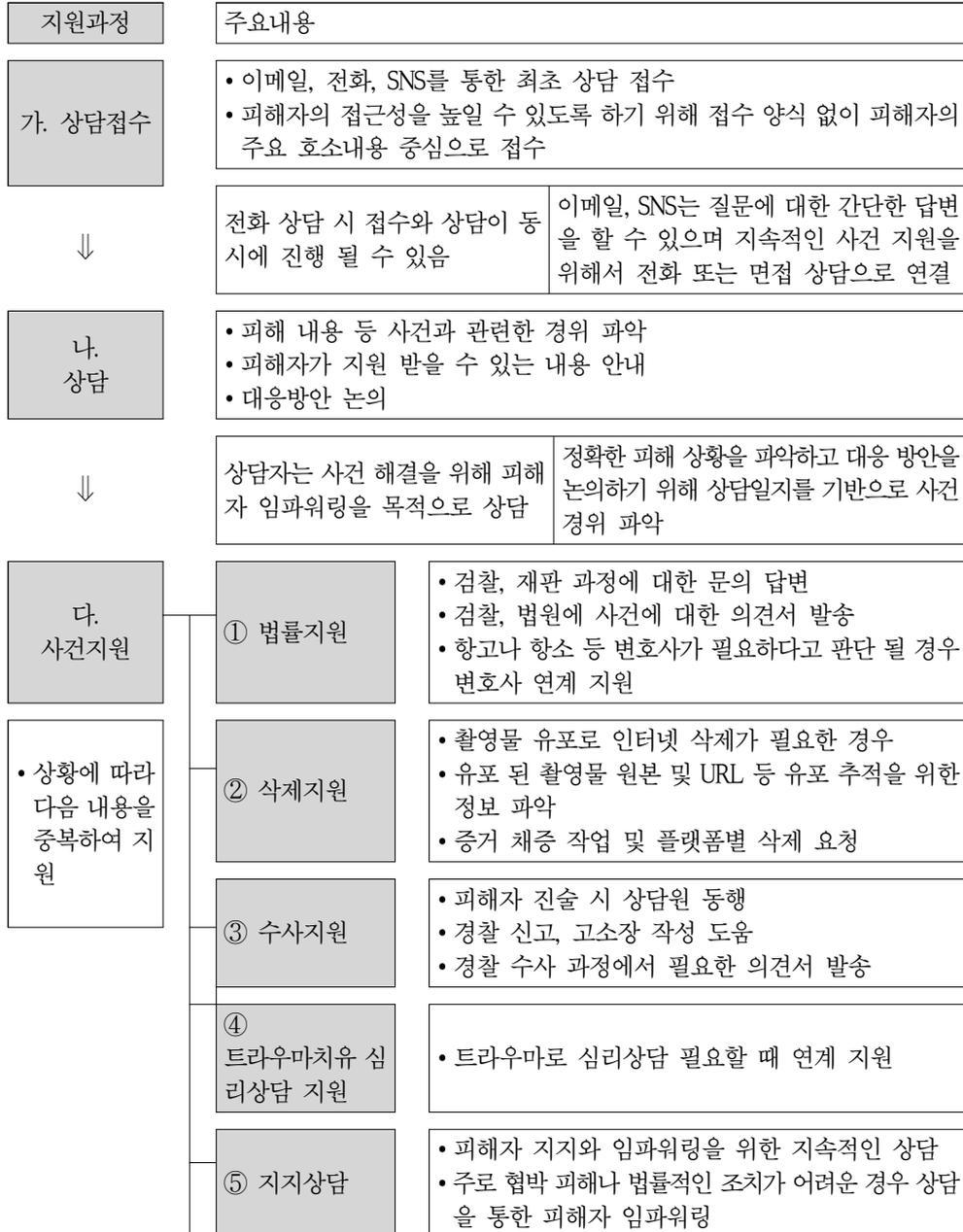
#### 1. 피해자 상담·지원 프로세스 구축

##### 1) 프로세스 구축 과정



## 2) 사건 지원 절차 상세 내용

### (1) 절차도



## (2) 상세내용

### 가. 상담접수

목표	- 피해자가 접근 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 피해자가 주요하게 알고 싶고 원하는 내용으로 상담 접수
상담자	- 이메일, 홈페이지, SNS상담 접수에 대한 양식은 없지만 피해자 가해자 관계, 사건 경위, 피해 시기, 신고여부, 원하는 것을 간략히 적어 줄 것을 공지. - 이메일, 홈페이지, SNS상담의 경우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진행 될 경우 전화 상담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자료 등은 이메일로 받음 - 최초상담이 전화 상담인 경우 피해 접수와 상담이 한번에 진행 됨
주요 고려 지점	- 최초 상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 단계로 이메일, 홈페이지, SNS상담의 경우 빠른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

### 나. 피해자 상담

목표	- 피해상황과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파악 - 본격적으로 사건 해결 방향과 대응 방안 모색 단계 -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라포 형성
상담자	- 피해자의 피해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시점, 피해 도구, 내담자와 피해자 관계, 피해 유형, 피해자 거주지 등 피해 경위 상세히 파악 - 피해 유형별 파악해야 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유포, 사진유포, 사진 합성: 유포 된 촬영물, 유포된 플랫폼, 유포 게시글 URL, 게시글 캡처 확보여부 등</li> <li>• 유포 협박: 가해자 관계, 촬영물 확인 여부, 촬영물 확보여부 등</li> <li>• 유포 불안: 촬영물 존재 여부, 가해자 협박 여부, 불안을 느끼는 이유 파악</li> <li>• 불법 도촬: 가해자 현장 검거시 증거물 확보/ 인터넷 유포 시 피해 장소, 증거 채증</li> <li>• 사이버불링: 화면 캡처, 내용, 가해자 신변</li> </ul>
주요 고려 지점	- 사건 대응을 위한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임파워링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다. 사건지원

### ① 법률지원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재판 과정 지원</li> <li>- 사법제도가 낮은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li> <li>-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력</li> </ul>
<b>주요 지원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 재판 과정에서 진술 시 피해자 동행</li> <li>- 사건에 대한 의견서 발송</li> <li>- 필요시 변호사 연계</li> </ul>
<b>상담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단계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함.</li> <li>- 또한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li> <li>- 평균적인 소요 시간, 진행 절차와 의견 개진 방법 안내</li> <li>-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li> </ul>
<b>주요 고려 지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연계 시 별도의 비용 발생. 때문에 국선변호인,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부담 될 수 있음을 안내</li> <li>- 국선변호인 무료. 단, 형사고소 한 이후 선임 할 수 있음</li> <li>-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음.</li> <li>- 법률지원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li> </ul>

### ② 삭제지원

<b>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촬영물 삭제</li> </ul>
<b>주요 지원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에 유포 되어 있는 촬영물 검색 및 삭제요청</li> <li>- 삭제 요청 한 게시물 결과 확인 후 피해자에게 지원 내역서 전달</li> </ul>
<b>상담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할 경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li> </ul>
<b>삭제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 키워드 추출 하여 검색 프로그램 활용하여 검색</li> <li>- 웹하드 등 프로그램이 접근 못하는 사이트 사이버활동단이 직접 검색</li> <li>- 검색 촬영물 피해 촬영물인지 확인 거쳐 삭제 요청</li> <li>- 삭제요청 한 게시물 결과 확인</li> </ul>
<b>주요 고려 지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시기는 다르지만 3개월 집중 삭제 기간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촬영물 검색하고 삭제요청하고 재업로더들에 의한 재유포 피해 모니터링 함</li> </ul>

③ 수사지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수사 과정 지원</li> <li>- 수사과정이 낯선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li> <li>-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력</li> </ul>
주요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진술 시 피해자 동행</li> <li>- 사건에 대한 의견서 발송</li> <li>- 필요시 변호사 연계</li> </ul>
상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소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임을 안내</li> <li>- 평균적인 소요 시간 평균 3개월,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li> <li>- 고소장 작성 방법 안내하고 작성 후 검토</li> <li>- 진행 절차와 의견 개진 방법 안내</li> <li>- 상담자(또는 활동가) 진술 시 동행 가능 안내</li> </ul>
주요 고려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연계 시 별도의 비용 발생. 때문에 국선변호인,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선으로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부담 될 수 있음을 안내</li> <li>-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인 무료. 단, 형사고소 한 이후 선임 할 수 있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경우 선임 지원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하여 안내</li> </ul>

④ 트라우마 심리상담 연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우마 심리 상담 필요한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연계</li> </ul>
주요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우마 심리 상담 전문가 연계</li> </ul>
상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의료비 지원 가이드 숙지 후 지원 가이드 피해자에게 안내</li> </ul>
주요 고려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로 연계 가능.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거주지 구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li> <li>- 성폭력피해자 트라우마 치료가 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여 수시로 정보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li> </ul>

## ⑤ 지지상담

목표	- 피해자 임파워링을 목적으로 상담
주요 지원 내용	- 협박이나 당장 법률적인 조치가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임파워링
상담자	- 접수 상담을 받은 상담자가 피해자와 라포 형성 후 피해자가 임파워링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는 과정 - 피해라고 느끼지만 당장 다른 조치가 불가능 할 경우 피해자들은 무기력감이 나 분노 감정이 생기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 함.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해석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주요 고려 지점	-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 한 결과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가 발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의뢰가 어려움. 하지만 피해자는 협박만으로도 피해가 발생 한 것이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함. 대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 2.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 시사점

### 1) 상담접수

<p>시범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건수 총계 81건, 상담인입경로 전화 53건(65%), 타기관 연계11건(14%), 홈페이지 9건(11%), 메일 4건(5%), 페이스북 4건(5%)</li> <li>-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사이버성폭력에 해당하는 카메라이용촬영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통계가 2016년 한 해 동안 101건 임. 상담을 받은 기간으로 비교했을 때 시범 사업에서 상담 건수가 결코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음.</li> </ul>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암수율을 감안하였을 때 상담을 받지 못한 피해자 많을 것으로 예상</li> <li>- 상담에 대한 접근 장벽은 최대한 낮아야 함. 이를 위해 상담창구에 상담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li> <li>- 또한 상담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는 기관의 신뢰성이 중요</li> <li>- 1366, 해바라기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li> </ul>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창구에 대한 온라인 홍보방안 모색</li> <li>- 유관기관에 지원 내용홍보와 연계의뢰서를 만들어 배포</li> <li>- 연계기관 활동가들의 사이버성폭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계기관 워크샵</li> <li>-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상담창구 개설</li> </ul>

### 2) 피해자 상담

<p>시범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달에 약 40건 정도의 사건을 상담 받았으며 연속상담을 고려했을 때 상담 횟수는 건수의 몇 배의 숫자가 될 것임을 예상</li> <li>- 삭제를 위한 정보를 상담과정 중에 파악하고, 삭제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는 유포피해의 특성상 실제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상담과 삭제가 동일한 활동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li> </ul>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재생산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li> <li>- 원활한 상담을 위해 상담 부스와 면접상담실 필요</li> </ul>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지원환경 마련</li> <li>- 삭제활동과 상담이 분리되는 활동이 아니라는 특성을 전제로 두 활동이 가능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가 인력 지원 및 양성 필요</li> </ul>

### 3) 사건지원

#### ① 법률지원

<p>시범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에서 법률지원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별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었음. 따라서 본 시범사업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li> <li>- 별도로 진행된 법률지원은 여성변호사회와 협의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연계진행하였음</li> <li>- 그러나, 기존 영상삭제 요청 피해자 중에서도 법률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많아서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음</li> <li>-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를 통한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통한 법률 지원은 조기예산 소진으로 인해 본 사업과 연계될 수 없었음.</li> </ul>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li> <li>- 하지만 한정 된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매년 기금이 부족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움.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빠져 있지만 서울시 기금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 필요 기금 지원 기준은 여성가족부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li> <li>- 또한 유포 피해 중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이용이 어려움. 이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 필요</li> <li>- 다양한 변호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li> <li>-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판단 기준의 변화를 꾀해야 함</li> </ul>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을 위한 여성변호사회 연계 및 협약 체결 제안</li> <li>- 변호사선임비용의 공적 지원은 한계가 있으나 매칭펀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률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li> </ul>

② 삭제지원

<p>시범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업과 달리 피해촬영물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li> <li>- 소요기간 대비 영상삭제의 결과 및 주기적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로그램도입의 유용성이 있음</li> <li>- 그러나 국내사이트, 개인메신저, SNS, 외국포르노사이트 등 유포 된 플랫폼 별 특징에 따라 검색과 삭제요청 방법이 다름.</li> <li>- 플랫폼 별 각 특징 때문에 삭제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게시물 삭제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함</li> <li>- 영상삭제 요청의 경우, 10년전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유포피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에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삭제지원에 대한 캠페인등이 지속될 필요도 있음.</li> </ul>
<p>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찾아낸 촬영물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삭제 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의 몫으로 남음.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실제 활동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삭제 과정에서 유출 예방, 젠더 감수성 부재 및 성폭력피해 대응 전문성 미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풀 구성이 필요함</li> <li>- 영상삭제 프로그램의 정보보안 등도 중요한 과제로 남음</li> </ul>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별 대응방안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피해 대응 매뉴얼 배포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삭제지원을 통한 상담통계 구축이 기반이 되어야함</li> <li>- 젠더 감수성을 기반으로 성폭력 지원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이버활동단 구성. 이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상담원 교육 이수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li> <li>- 비동의 유포 촬영물이 흥밋거리로 전락하여 공유하고 전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인식개선 활동 필요</li> </ul>

### ③ 수사지원

시범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에서 수사지원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기존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상담체계를 통한 가해자 확정 및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연계하여 진행하였음.</li> <li>- 사이버성폭력피해의 경우 자신의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재생하여 확인, 성기 등 ‘음란한’신체가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수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현실.</li> <li>-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이 드러남</li> <li>- 증거채집을 피해자가 직접해서 신고를 해야 함. 또한 수사과정에서 유포 차단을 위한 게시물 삭제 등의 지원이 없음</li> </ul>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관 인식개선이 필요함</li> <li>- 여성청소년계와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성폭력 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 및 수사 기법 확보</li> </ul>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수사 시 동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인식개선 교육 필요</li> <li>-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과정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 마련</li> <li>- 여성청소년계와 사이버수사대의 공조 및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시급함</li> </ul>

### ④ 트라우마치유 심리상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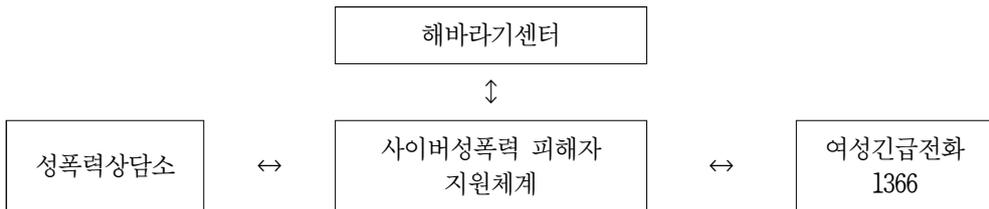
시범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시범사업은 피해자지원협회를 통해 트라우마치유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총 7회기에 걸쳐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li> <li>- 심리치료의 평균 상담비를 기준하여 상담비를 책정하고 진행하였음</li> <li>- 트라우마 치유상담 전문가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피해에 대한 특성 및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상담방식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li> <li>- 그러나 심리상담은 주 1회이상 상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총 7회의 회기는 삭제, 수사지원이 동반되는 경우 상담의 한계가 있었음</li> </ul>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라우마 심리상담은 심리치료, 법률지원, 삭제지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존 트라우마 치료와 다른 차별점이 있음. 이를 반영한 심리상담 연계가 필요함.</li> </ul>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하되, 심리상담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이버상담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 있음</li> </ul>

⑤ 지지상담 지원

시범사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된 상담이 단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속 상담으로 지속되는 경우 수습회의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li> <li>- 법률 등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의 불안과 무기력함, 두려움을 다루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상담자의 상담이 필요</li> <li>- 특히 법적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등에서는 피해자 입파워링을 위한 지지상담이 중요</li> </ul>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인력 확보</li> <li>- 상담자의 젠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li> </ul>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인력 교육</li> <li>- 인건비 지원</li> </ul>

3.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구축

-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집중해서 다루다 보면 중복으로 피해가 있는 공간, 성추행 등의 피해 지원이 어려움. 이 때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 지원센터에 피해자를 연계하여 공조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또한 각 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특히 유포 피해자의 삭제 지원 등이 필요할 때 각 기관에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



## □ 사이버성폭력 정책 과제

### 1. 단기과제

#### 1)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넘은 사이버성폭력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 지지구조를 만든다는 것에서 사회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이후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피해를 예방하고 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함
- 피해 촬영물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 진행
  - 아동이 아니라 범죄 영상이고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 할 수 있는 대중 캠페인 실시
  - 연령대 별 사이버성폭력 가해 특징을 분석하여 생애주기에 특화 된 교육 강의 개발. 예를 들어 10대는 사이버공간에서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한 성적인 모욕과 사진 합성 등의 가해행위 빈번하게 발생. 이러한 내용을 특화한 교육안 개발
- 여성단체 등 사이버성폭력 대응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 사이버성폭력 대응 활동에 대한 자문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논의 및 의견청취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조 마련
  - 삭제 지원을 위한 플랫폼 별 대응 방식 구체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 피해 유형과 현황 파악을 위한 상담 통계 구축방안 논의

#### 2)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전문인력 체계 구축

- 피해 촬영물 삭제와 웹 모니터링 상시화를 위한 인력 확보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경력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자 대상
  - 사이버 활동단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다른 성폭력사건 대응과 달리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확산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빠른 수사 진행에 초점. 이를 위한 수사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내 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 구체적인 삭제 방법, 유포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자 지원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교육

### 3)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의 업무 분담과 연계 체계 구축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의 연계지점을 구체화하고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연계기관 활동가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진행

### 4)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에서 피해 촬영물을 완벽히 삭제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들이 인터넷 삭제에 매달리고 있음. 삭제 지원의 명확한 한계 속에서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
-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젠더적 관점에서 피해를 해석하고 역량강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발

## 2. 장기과제

### 1)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 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 보장
- 현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정보통신법의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 등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로 인지하여 법률조

력을 받을 권리, 피해자와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등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2) 피해촬영물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기준 재논의

- 이를 위해 법률에서 피해촬영물 재유포 시 ‘음란물’, ‘음란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
  - 피해 촬영물이 재유포 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피해영상물은 일반 ‘음란물’이 아니고 ‘음란성’ 판단 기준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불법 도촬의 촬영물의 경우 광범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유포 됨. 또한 원유포 이후 다운로드 되고 다시 업로드 되면서 원유포자의 범죄행위가 희석되어 단순 유포자들에 의해서 소비되고 유통 됨. 하지만 이 촬영물이 피해 촬영물인 것은 변하지 않음.
  - 계속해서 ‘음란물’ 판단 기준으로 기소유예나 약소한 벌금 형 등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재유포자들을 처벌 할 경우 유포를 막기 어려움. 법률적으로 ‘음란물’ 판단 기준이 아닌 피해 촬영물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법률 재검토
- 동시에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같이 해야 함

## 3) 인터넷 플랫폼의 피해 촬영물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한 감시 및 제재

- 웹하드 및 P2P 등의 인터넷 플랫폼 단위의 직간접 차단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는 법적 장치 및 시행 지침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감시팀이 운영되어야 함
  - 사이버성폭력 대응이 피해의 양적 확대와 재생산을 양산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 4)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포르노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위한 조치 마련

- 피해 촬영물 유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해외 서버를 이용한 한국어 제공 포르노사이트. 피해촬영물이 게시되고 있지만 추적과 삭제가 어려운 현실. 따라서 국제공조를 통해 불법 포르노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처벌을 위한 수사 협력 및 국제적 공조 실행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지원체계 가이드라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발행처 :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업수행 :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 시범사업단

- 사업책임: 최자은(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임경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과장)  
조자경(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장)  
강효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임)
- 사이버활동단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여 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처장)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차장)  
이효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 외 10명
- 사업자문 : 이선미(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교육팀장)

발행일 : 2018년 1월

발간번호 : 51-6110000-001743-01

ISBN 979-11-6161-231-7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  
결과 및 지원체계  
가이드라인